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

이 보고서는 집합투자기구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48 조제 1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신탁업자명 :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문의가능 전화번호 : 02-2004-8963/0991

1.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가 집합투자기구 명칭:

삼성KODEX자동차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나. 집합투자기구 분류: 증권형[주식] 집합투자기구
다. 보관 • 관리기간: 2010.06.26 ~ 2011.06.25
라. 집합투자업자: 삼성자산운용(주)
마.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교보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대우증권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우리투자증권, 현대증권
에이치엠씨투자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 SK증권
삼성증권, 케이비투자증권, 크레디트스위스증권
하이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2.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p>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예상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p> <p>8.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p> <p>9.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p> <p>10.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 투자판단에 중대한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고시하는 시향</p> <p>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 2 항의 규정에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p> <p>의하여</p> <p>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통하여 직접 또는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수익자가 전자우편을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통하여 수령한다는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로 표시를 한 경우에는라 공시하는 것으로 같은 전자우편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교부할 수 있다.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p> <p>부칙 신설</p> <p>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 (집합투자업자의 사명변경 및 명개정 반영)</p>	<p>수) 평균 잔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 신탁 순자산총액을 보수총액을 보수 계산기간의 계산기간의 초일부터 보조일부터 보수계상 당일까지 누적하지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계산기간의 일수로 나누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1.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3.5 1.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3.4</p> <p>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1.0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5</p> <p>3. 신탁보수율: 연 1,000분의 0.2 3. 신탁보수율: 연 1,000분의 0.2</p> <p>4. 일반사무보수율: 연 1,000분의 0.3 4. 일반사무보수율: 연 1,000분의 0.4</p> <p>⑤ 생 략 ⑤ 생 략</p> <p>부칙 신설</p> <p>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 (투자신탁 보수 변경)</p>	
2010.11.01	36조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운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유통제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한)는 행위를 수탁 회사에위를 수탁 회사에게지시할 계지시할 수 없다. 다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약, 법령 및 규정에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호와 관련된 법 다음 각호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이 변경되는 경영 및 규정이 변경되는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유통제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한)는 행위를 수탁 회사에위를 수탁 회사에게지시할 계지시할 수 없다. 다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약, 법령 및 규정에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2010.11.01	1. ~ 3. 생 략 1. ~ 3. 생 략 4.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부채총액을 뺀 가액의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100분의 10을 초과하여위 투자하는 행위 5. ~ 6. 생 략 5. ~ 6. 생 략	1. ~ 3. 생 략 1. ~ 3. 생 략 4.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부채총액을 뺀 가액의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100분의 10을 초과하여위 투자하는 행위 5. ~ 6. 생 략 5. ~ 6. 생 략	
제38조	① ~ ③ 생 략 ① ~ ③ 생 략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자산호의 보수율에 보수계산보수율에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재산의 투자신탁재산의 평균 잔액	① ~ ③ 생 략 ① ~ ③ 생 략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자산호의 보수율에 보수계산보수율에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재산의 투자신탁재산의 평균 잔액	

3.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변경일자	변경 사유	성명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³⁾	협회등록번호
2011.03.02	말소 사봉하		- 2001년 2 월 Columbia Univ. 통계학 석사 - 2001년 2 월 삼성생명 주식운용 - 2002년 4 월 삼성투신 운용 LT 주식 1팀 운용역 - 2003년 1 월 ~ 現 삼성투신운용 ETF 운용팀	2109000726
2011.03.02	신규 김남기		- 2003년 7 월 고려대학 교 경영학과 졸업 - 2003년 7 월 삼성자산 운용 신탁회계팀 - 2004년 11월 채권2팀 - 2006년 7 월 채권1팀 - 2007년 11월 ~ 現 ETF 운용팀	2109001159

4.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 해당사항없음

5.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

- 해당사항없음

6. 회계감사인의 선임 · 해임에 관한 사항

회계 감사인명	계약 기간	변경전		변경일	변경후			
		감사 보수	계약 방법		회계 감사인명	계약 기간	감사 보수	방법
안진회계법인	1년	220 만원	서면계약	-	-	-	-	-

7. 법 제247조 제5항 각호의 사항 확인

-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부합함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적정함

-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해당사항없음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 공정함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 적정함
-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 집합투자신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 해당사항없음
- 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의 여부
 - 본 항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조 제 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의 확인사항이 아님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예금과는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운용 및 투자 등에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